



## 제2부

# 정보 시스템 구축 - 지정, 기록, 아카이브

# 정보 시스템을 위한 무형문화유산 정보 생산과 수집

헤수스 페랄타  
필리핀 국가문화예술위원회 자문관

## 개요

필리핀이 유네스코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의 첫 선포를 위해 등재신청 항목을 파악할 때 기준으로 삼은 것은 상황 적합성과 포괄적인 정보 이용가능성이었다.

차후 데이터 수집 방식은 원칙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의 식별에 근거를 두었다. 즉, 지속적으로 수행되면서 발전 또는 쇠퇴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파악하는 데 토대를 두었다. 필리핀 국내의 정치 및 제도 구조 속에 전통 문화유산의 많은 부분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문화유산이 신앙과 가치 체계에 변화를 야기한 세계 주요 종교의 도입에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필리핀에 문화유산의 원천인 80개의 언어 집단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복잡해진다.

마지막으로 정보가 수집되는 방식을 살펴보면, 필리핀 지자체 단위에서 주 단위로 업로드되고, 이어서 관련 국립 문화기관, 그리고 최종적으로 필리핀 국가문화예술위원회(NCCA)에 통합되어 국가 등록으로 유지·관리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문헌조사와 예비 현장연구가 실시된다.

2000년 이후 필리핀에서 실시한 무형문화유산 목록작성을 위한 데이터 식별 및 수집 과정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 i) 2000년 유네스코에 제출할 필리핀 최초 무형문화유산 등재신청 항목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문화예술위원회가 취한 초기 긴급조치
- ii) 위의 선행 경험을 바탕으로 한 무형문화유산 식별 및 수집 프로그램을 위한 후속 실행계획 수립
- iii) 식별 및 수집 방법론

## I. 초기 긴급조치

국가문화예술위원회가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선포를 위한 신청서 제출과 관련된 발표문을 접한 것은 2000년 7월로, 발표문에는 등재신청서 제출 기한이 5개월 후인 2000년 12월까지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분명히 시간이 촉박했다. 관련 발표문에 대한 첫 대응은 다음과 같았다.

- (1) 명시된 범주에 적합한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이 필리핀에 상당수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등재신청서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적합하게 서술되고 문서화된 유산은 전무했다. 등재신청서 제출 기한이 촉박했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했다.
- (2) 이번 계획은 유네스코와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를 위해서 단 한 건의 등재신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이 따라야 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운영예산을 갖춘 기구가 국가문화예술위원회 산하에 단 한 곳도 없었다. 따라서 국가문화예술위원회 내에 운영예산을 갖춘 무형문화유산위원회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인식을 함께 했으나, 이러한 위원회를 조직하는 것 역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즉각적인 대응은 국가문화예술위원회가 임시 핵심 집단을 구성하여 등재와 그 밖의 제반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졌다. 이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소집하여 역사, 예술, 민족지학, 사회학 및 인류학의 견지에서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의 우선순위 목록을 정리했다. 또한 기록 전담팀의 동원도 고려되었다. 문헌조사의 결과가 제출되었

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유명한 필리핀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중에서 어느 항목이 가장 중요도가 높으면서도 등재신청서 마감기한 내에 준비작업을 최소화 할 수 있을 만큼 가장 확실히 기록되어 있는지 판단했다. 부차적 정보의 이용가능성 또한 고려되었다. 우선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 항목이 선정되었다.

- (1) 이푸가오주 이푸가오족의 후드후드(Hudhud)
- (2) 라나오 델 수르 주 마라나오족의 대서사시 다란젠(Darangen)
- (3) 파나이 섬의 라바우 동곤(LabawDonggon)/히닐라우드(Hinilawod)
- (4) 민다나오섬의 마누부(Manuvu) 이야기

해당 관련 정보를 평가한 결과, 자문회의는 이푸가오족의 후드후드를 필리핀의 등재신청 종목으로 결정했다. 근본적인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후드후드는 확실히 동시대에도 유효한 뛰어난 전통적 가치를 지닌 인류의 업적으로 간주될 수 있다.
- (2) 후드후드에 관한 이용가능한 출판자료가 충분하다.
- (3) 후드후드가 연행되는 지역이 수도와 근접하여 물류이동에 큰 문제없이 신속한 시청각 기록 작업이 가능하다.
- (4) 자료 제공자의 파악이 용이하다.
- (5) 기록 작업에 참여 가능한 전승자를 파악할 수 있다.

향후 이러한 문제와 기타 항목을 처리하기 위해 실행계획을 동시에 수립하여 실시했다. 기록 전달팀을 이푸가오 지방으로 파견하여 자료 제공자가 섭외한 전승자들과 작업하도록 했다. 동시에 이용 가능한 민족지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서화 작업에 착수했다. 등재신청서는 마감기한 내에 제출될 수 있었다. 2001년 5월 국가문화예술위원회는 후드후드가 '유네스코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포된 19건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다.

## II. 필리핀 문화재 등록부의 무형문화유산 식별과 보호우선순위 필요성 인식

필리핀 공화국법 제 10066호, 2009년 문화유산법(Cultural Heritage Act)에 따라 모든 유·무형 문화유산을 목록으로 기록하는 필리핀 문화재 등록부(PRECUP)는 다음의 항목에 특히 주목하였다.

- (1) 지속적으로 연행되며 발전 또는 쇠퇴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
- (2) 지속적으로 연행되지만 소멸 위험에 처해있고 쇠퇴하고 있지만 아직은 생존 가능한 무형문화유산
- (3) 지속적으로 연행되고 있지만 소멸 위험에 처해있으며 더 이상 생존 가능하지 않는 무형문화유산
- (4) 더 이상 연행되지 않지만 아직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무형문화유산

그러나 유네스코 협약의 목적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위의 (1)과 (2)에 초점을 맞추고, (3)과 (4)는 기록 작업의 대상으로만 다룬다. 일부 무형문화유산 정보를 식별하는데 있어 다음의 내용 또한 고려했다.

1) 첫째,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적어도 필리핀에서), 무형문화유산 종목이 연행되는 사회 안에서 여전히 지속가능한 사회과정이라는 점이다. 무형문화유산은 반드시 해당 문화의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활동이어야 한다. 유네스코의 취지에 따라 무형문화유산 종목은 적절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전통에 따라 보존되어야 한다.

둘째, 문화 진화의 차원에서 민족 집단이 변화하였고 또 수많은 무형문화유산이 더 이상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가능한 전통적 맥락에서 해당 유산들을 보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첫 번째 문제가 기본이 되는 과제이므로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다루어져야 한다. 적절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전통에 따라 보존하는 작업을 통해 어떤 항목이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에 해당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통적인 관습과 사회의 맥락에서 이러한 전통 관습의 재도입과 발전을 방해하는 현대 사회조직 및 구조와 충돌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작업은 바

람직한 일이지만 희망사항으로 끝나기 쉬운 반면, 경우에 따라서는 실현 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토착 종교가 기독교나 이슬람교 등 세계 주요 종교로 대체되어 영향력, 종교 및 가치 체계로서 변화를 겪었지만, 사회의 구조와 조직에서는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에 있다. 민족 거주 지역의 내부구조는 거의 손상을 입지 않았으므로 아직까지는 사회과정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사회적 배경으로 적절하게 재도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 2) 필리핀에는 최소 80개의 주요 민족언어학적 집단과 400개 이상의 하위집단이 있다. 이들 모두에게 고유한 문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방대한 업무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문화 변용이 많이 진행되었거나 문화적 쇠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집단에 즉각적인 관심을 기울인다.
- 3) 활용 가능한 전문인력이 제한적이지만 무형문화유산위원회는 편의상 유네스코가 정한 다섯 분야에 초점을 맞춘다.
- 4)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어떤 무형문화유산 형태가 수명이 가장 짧고 소멸 위험에 처해있는지를 고려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특히 앞서 언급한 2번, 즉 소멸 위험에 처해 있지만 문화가 속한 사회적 맥락에서 여전히 지속이 가능한 현존하는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종목에 초점을 맞춘다.
- 5) 기록화를 위해 무형문화유산 항목의 정보·데이터의 이용가능성 또한 고려 대상이다. 충분히 많은 정보자료를 갖춘 종목에 즉각적인 관심을 기울이는데, 이는 해당 종목의 기록화가 쉽게 성취 가능하기 때문이다. 처음에 이푸가오족의 후드 후드와 마라나오족의 다란젠 등재에 노력을 기울인 이유 역시 두 항목 모두 구전 표현물이지만 이미 이용가능한 충분히 많은 데이터가 확보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 6) 전통 필리핀 사회의 무형문화유산 대부분은 의례가 중심이 되며 다양한 종족 집단의 발리안(Balian), 베이란(Baylan), 바베이란(Babaylan), 뭌바키(Mumbaki), 뭌부농(Mumbunong), 맨-아리식(Man-aalisig), 몬킨테마(Monkintema), 몬라푸(Monlapu) 등 전문가들과 기타 다양한 민족 공동체의 낭송가에게 의존하고 있다. 전통 관습이 일반적으로 의례를 토대로 하거나 이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지적했다. 이들 전문가들이 모두 사망하면, 필리핀 무형문화유산도 모두 사라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형문화유산 문제에 관심을 촉구하는 이유이다. 전승자들이 이어오고 있는 유산이 영속되는 것은 고사하고 확실히 보존될 것이라는 어떤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문화의 전달자들이 사라지기 전에 관련 정보의 원천인 전승자들에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7) 목록작성 작업은 사실상 필리핀 국민들의 문화 지도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유네스코가 정한 무형문화유산 분야별로 다를 예정이다. 이상적인 계획은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전체를 망라하는 문화지도를 작성하는 것이지만, 자료의 규모가 실로 방대하기 때문에 현실성을 감안하여 문화지도를 파악하기 위한 실질적인 매개변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각각의 문화 집단에는 집합과 부분집합이 다른 고유의 종교체계가 있으며, 모두 특정 의식과 의례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기록화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가 연구 대상인 문화에서 나타나는 미묘한 차이를 민감하게 감지해서 다른 무형문화유산 분야로 구분하여 기록할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 그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주기적인 농경의례와 같이 주요 생계활동에는 그 하위집합으로 각종 의례가 있다.

- 8) 특정 문화 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해당 문화의 모든 분야를 파악할 수는 없으며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느냐 하는 전문성은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광범위하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이 중요하다.
- 9) 무형문화유산의 소유 형태가 단독 또는 공동 소유로 나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목록에서 이러한 사실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10) 특정 항목이 무형문화유산에 속하는지 여부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먼저 기록으로 남긴 다음 해당 문제는 차후에 해결할 수 있다.

### III. 무형문화유산 기록화 방법

필리핀의 80여 개의 민족언어학적 집단에서 발전 또는 쇠퇴 여부와 상관없이 현존하는 지속가능한 무형문화유산 종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목록을 작성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알려진 대부분의 종목은 무수히 많은 자료 중에서 각기 다른 출판물에서 발견되었으므로, 수집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과제는 이용 가능한 문헌을 검토하여 중요한 무형문화유산 종목을 확인하고 잠정목록을 작성하는 일이었다.

- 1) 먼저, 문헌을 통해 수집 및 분석한 정보를 워드 프로세스 문서로 작성한다(현재 대략 260개 무형문화유산 종목에 대해 약 390페이지에 달하는 문서가 작성되었으며,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무작위로 수집한 간략한 개요도 포함된다).

2) 이와 함께, 필리핀의 모든 민족언어 집단의 민족지학적 영역을 망라하기 위해 도서관을 조직하여 아직 구하지 못한 민족지학적 문헌을 수집함으로써 수집자료를 확대한다. 이는 기존 문헌의 대조조사를 포함하는 장기 프로그램이다. 이 작업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에 어떤 종목이 포함되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무형문화유산에는 기존의 전형적인 사례들과 더불어 수많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 새로운 형태와 기존 사례에 대한 포괄적인 편집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문헌에는 일람표가 있지만 무형문화유산의 '결정판'이라고 부를 만한 목록이 없는 실정이다.

필리핀의 일부 서사시, 민속학 및 기타 구비문학 형식에 대한 출판물을 비롯하여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방대한 문헌 자료가 존재하지만 아직도 기록화 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각 민족 집단의 고유한 중요 의례에 대한 문자 기록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푸가오족은 문서 기록이 가장 많은 민족집단으로 종교체계와 의례에 대해 많은 부분이 기록되었지만, 실제 많은 기록이 피상적인 수준에 그친다. 예를 들어 이푸가오족의 종교체계는 필리핀에서 가장 풍요롭고 복잡하며 약 2,000명의 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런 부분은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 특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신들에 대한 신화의 경우는 더욱 기록이 적다. 의례(예를 들어, 최소 20개의 농경의례) 대부분은 문자로 기록되지 않았는데, 의례 그 자체가 한편의 서사시이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후드후드 성가가 존재하는지 또는 알림(Alim)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다. 마라나오족의 대서사시 다란젠은 한번도 완창된 적이 없다. 필리핀의 모든 지역이 이와 같은 실정이다.

## 실행계획

### 제1 단계

실행계획은 전국적인 문화재 목록 등재 작업으로, 기본적으로 다음의 항목을 포함한다.

- 1) 필리핀의 5개 국가 문화기관에서 수집한 기존의 목록을 최우선 대상으로 삼는다. 이들 목록이 이미 연구와 검증을 거쳐 수집한 데이터로 이루어진 수집품의 본체이기 때문이다. 5개의 국가 문화기관은 다음과 같다.
  - i. 문화 센터(Cultural Center of the Philippines)

- ii. 국립박물관(National Museum)
- iii. 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 iv. 국가기록원(National Archives of the Philippines)
- v. 국가언어학회(Commission on National Language)

2) 앞서 언급한 여러 목록의 주요 문제점은 각각의 기록 형식이 서로 상이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목록마다 특수화된 세부 분야의 수만 다르게 유지하면서 모든 데이터를 동일한 형식으로 통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 제 2 단계

실행계획의 다음 단계는 지역의 목록작성 작업이다. 이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작성된 목록을 포함한다. 필리핀에서는 바랑가이(barangay)와 시티오스(sitios)가 모여 지자체를 이루고 지자체가 모여 주 정부를 형성한다. 이때 지방 정부는 주 정부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목록작성 작업에서 실행가능한 작업 단위는 관리가 좀 더 용이한 지자체(하위 단위 포함)이다. 또한 지자체 목록 결과물의 전체 합은 사실상 주 정부의 기록과 자동적으로 일치할 것이다.

무형문화유산은 도시 지역에서 비교적 낯선 개념이고 일반 대중은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의 폭이 상대적으로 좁다. 따라서 농촌 지역의 관계 당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언어종족 집단의 무형문화유산 종목을 파악하고 수집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은 주 단위에서 실시하도록 계획하여 각 지자체 단위에서 목록작성 작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참여하도록 한다. 교육을 받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번에는 언어종족 집단의 지역 지도자들에게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다양한 목록 중에서 형식 상 가장 중요한 호환성 문제를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모든 목록이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베이스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목록의 유형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형식이 서로 호환될 수 있는 국립 문화기관으로 해당 자료를 업로드해야 하기 때문이다.

데이터베이스 형식이 확정되면 정보 수집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지자체 차원의 목록은 주 정부 차원으로 업로드되어 편집되는데, 이 단계에서 입증 및 검증을 마친다. 주 정부 단위 목록은 특정 국립 문화기관과의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여 국가 단위로 업로드된다. 마지막으로, 국가 단위 목록은 국가문화예술위원회가 유지·관리하는 필리핀 문화재 등록부에 저장된다.